

제5차
이사회 회의록

< 2010. 2. 26(월) >

한국장학재단

2010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개요

① 회의일시 : 2010년 2월 26일(금) 11:00 ~ 12:30

② 회의장소 :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(24층)

③ 출석임원 : 8명

· 이사장 이경숙

· 이 사 김춘선, 김규옥(당연직 代. 김병규 교육과학예산과장), 이기봉(당연직 代.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), 김명환, 문태현, 천세영

· 감 사 홍동현

④ 불참임원 : 4명

· 이 사 홍영만(당연직), 이현봉, 정해룡, 홍규덕

⑤ 상정안건

□ 의결안건(6건)

· 제5-1호 2009회계연도 한국장학재단 결산(안)

· 제5-2호 2009회계연도 국가장학기금 결산(안)

· 제5-3호 정관 개정(안)

· 제5-4호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(안)

· 제5-5호 인사규정 개정(안)

· 제5-6호 복지규정 제정(안)

□ 보고안건(2건)

· 제5-1호 2010년 단체협약 체결 결과 보고

· 제5-2호 2010년 학자금대출 자원조달을 위한 단기차입 보고

⑥ 소관부서 : 경영기획실

2. 논의 결과(요지)

① 의결의안 제5-1호 : 2009회계연도 한국장학재단 결산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재단회계(재단고유사업계정, 미래한국100년인문학장학금사업계정, 기탁금사업계정, 수익사업계정) 결산현황
 - '09년말 현재 총자산 1조 7,628억원, 총부채 1조 2,581억원, 총자본 5,047억원이며,
 - '09년도 당기순손실 59억원 발생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재단 설립 초년도의 인프라 구축관련 초기 비용이 당기순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함. 금년부터는 손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
부채비율은 재단채권 발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문제가 안 될 것이며, 앞으로는 직접대출방식이 없어지고 ICL방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임
수익으로 할 경우 당기에는 표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표시되지 않음. 향후 회계처리 방법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진행

③ 논의 결론

향후 기재부와 회계처리 관련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함

② 의결의안 제5-2호 : 2009회계연도 국가장학기금 결산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기금회계(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, 학자금지원계정) 결산현황
 - '09년말 현재 총자산 2조 2,439억원, 총부채 1조 6,535억원, 순자산 5,904억원이며,
 - '09년도 재정운영결과 원가는 685억원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별도 의견 없음

- ③ 논의 결론
원안대로 의결함.

③ 의결의안 제5-3호 : 정관 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재단법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명시 (제1조)
- 임원 임기 조항 신설 및 개정된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반영(제12조)
- 재단법 및 특별법상 재단 내 학자금대출계정 설치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
-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계획서, 예산안 및 결산서 별도 작성
(제20조, 제22조의1, 제25조, 제27조)
- 학자금대출계정 구분 계리 등 (제24조, 제28조)
- 재단법상 채권발행 자본 규제(자기자본의 10배 이내) 조항 삭제 반영(제30조) 등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정관 제13조 제4항의 보고대상 중 2009년 12월 22일 개정된 공기업·준정부 기관 감사기준 제26조(감사보고서)를 반영하여 '기획재정부장관' 추가

③ 논의 결론

정관 제13조 제4항의 보고서 제출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

④ 의결의안 제5-4호 :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2009.12.29 개정)에 의거 변경된 임원선임 절차를 반영하여 개정
-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중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삭제

직 위	임 명 절 차	
	기 존	개 정(안)
상임이사	임추위 추천(복수) → 이사장 제청 → 교과부장관 임명	이사장 임명
비상임이사	임추위 추천(복수) → 재무운영위 심의·의결 → 교과부장관 임명	교과부장관 임명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주요 발언 없음

③ 논의 결론
원안 의결

⑤ 의결의안 제5-5호 : 인사규정 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2009년 업무제안 채택사안인 반일휴가제도 및 탄력근무제 반영하여 내용 일부 수정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주요 발언 없음

③ 논의 결론
원안 의결

⑥ 의결의안 제5-6호 : 복지규정 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임직원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과 생활안정 도모

- '10년 단체협약 체결('10. 1. 4)에 따른 관련 사항 복지규정에 명문

- 안전과 보건, 체육, 후생, 재해보상, 사내근로복지기금, 선택적 복지제도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제9조(출산장려비)의 경우 정부에서 막대한 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있음. 직원에게 별도로 주는 것은 맞지 않음.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

③ 논의 결론

제9조(출산장려비)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

㉞ 보고의안 제5-1호 : 2010년 단체협약 체결 결과 보고

㉠ 안건 주요내용

- 노동조합 현황('09. 12. 31 기준 108명/124, 87.1%)
 - 경과: 단체협약(3회), 실무자협의 회의(9회) → 노사단체협약 선진화 선포식('10. 1. 4)
 - 단체협약 현황(비조합원 범위, 조합가입, 노조전임자 등)

㉡ 논의 결론

보고의안 접수

㉟ 보고의안 제5-2호 : 2010년 학자금대출 재원조달을 위한 단기차입 보고

㉠ 안건 주요내용

- 단기차입목적 : 조달비용의 최소화
- 단기차입근거 :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3
- 단기차입조건 : 1, 2, 3개월 변동 및 고정금리
- 실행 방안 : 재원조달 예산의 20%내에서 단기차입 실시

㉡ 논의 결론

보고의안 접수. 폐회.